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청 등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의 청구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 동법 제13조의 5 동법 제13조의 6 동법 제13조의 7 및 제13조의 8 동법 제17조의 3	보 건 소 장
13. 치과기공시설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의료기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보 건 소 장
1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2조의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동규칙 제16조 제1항	보 건 소 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3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1995년 5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부칙('94. 3. 16)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확정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 일반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뀔에 따라 정원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이 당초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

○ 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허영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단체장선거에 따라 '95. 7. 1부터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바뀌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승인이 시정 12200-331('95. 5. 13)호로 통보되었기에 현행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74명에서 9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
----------	-----

제출년월일 : 1995.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부칙 ('94. 3. 16)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확정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 일반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뀔에 따라 정원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구청장이 당초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
- 구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3. 근거

- 시정 12200-331('95. 5. 13) :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 통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본청 : 975명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본청 : 974명 2.~3.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1. 구본청 : 975명		
	2.~3. (생략)		